

##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26.2.6.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 ▲소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촉진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개선

정부는 10.29.(목)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10.28.(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도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상정·논의

'26.2.6. 퇴직연금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소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다. '25년 기준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원)로 사외적립 의무화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면 체불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로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과 엄격한 수탁자책임이 요구된다.

두 가지 핵심과제를 포함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보편성 제고 : 쉰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개소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합의하여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년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9년 10~99인 사업장, '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3단계로 나누어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이때,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실태조사 결과 사업주는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한시적 정부지원, 정책자금 융자나 보증금리 한시 우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하여 '27년 정부안에 자율적 우선 도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지원(60억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영세 사업장 대상 수수료 특례 적용, 사용자의 규약신고 의무도 간소화한다. 사외적립 의무 확행을 위해 확정급여형(DB)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대상 정기감독을 지속 확대('26. 下 500개소)하고,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미납 현황 파악 체계도 구축한다.

## 2. 연금수령 촉진 : 장기적립 후 노후자금으로 연결

노동자가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다양한 연금상품을 출시하고, 기대수익·수령액 등 연금-일시금 비교정보 사전제공을 의무화한다.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도 일시금 수령의사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연금수령 유인을 높인다. 아울러, 분리과세 한도 확대('24.1.1.~, 1,200 → 1,500만원) 등 그간의 세제지원 효과를 점검하여 추가 세제지원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퇴직연금 교육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편하여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한다.

### 3.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적정 수익률 확보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26.2.6.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대로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①금융기관 개방형(금융회사 단독 또는 컨소시엄, 영리형 주식회사) ②연합형(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 비영리법인) ③공공기관 개방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퇴기금') 등, 공공기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 내에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인가-본인가의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나뉘며,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설정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제3자가 운용한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 도덕적 해이 등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적립금은 후불임금인 퇴직급여인 만큼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책임을 부여한다.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또한,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을 의무 적립 하도록 한다.

투자가능 상품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시하고, 분산투자·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자산운용규제도 마련한다. 자산보관, 기준가 산출 등 업무는 의무위탁\* 하도록 해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교차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정책 결정 등 핵심 업무는 위탁하지 못하도록 해 책임소재를 수탁법인으로 명확히 한다.

\* 일본 연기금 전문 대형 운용사인 AIJ는 10년 넘게 연평균 10%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허위 보고 → 총 운용자산의 약 2,100억엔 중 90% 손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과도한 수수료 책정은 통제한다. 제재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되,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체계(감독협의회 등)도 마련한다.

중퇴기금 가입대상을 '28.1월 300인까지 확대하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 미도입 사업장에 대해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되, 일정 기간 내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 중퇴기금 대상 확대 및 적립금 증가에 발맞추어 직접 운용역량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수탁법인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 4.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개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활성화와 병행해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도 개선한다. 퇴직연금 시장규모, 변동성을 감안하여 현재 70%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확정급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한다.

\* 원리금보장형 대비 수익이 높고 안정적인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등을 DC·IRP 투자대상에 추가, 중퇴기금의 중기부 LP성장펀드 출자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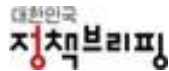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을 퇴출하는 등 수익률 중심으로 재편하고, 적용시점과 범위를 확대해 대기성 운용기간을 축소한다. 확정급여형(DB) 적립금운용계획서(IPS)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용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며, 법 시행으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       |                  |     |     |                    |
|-------|------------------|-----|-----|--------------------|
|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br>퇴직연금복지과 | 책임자 | 과 장 | 남성욱 (044-202-7554)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혜민 (044-202-7657)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br>연금보건경제과 | 책임자 | 과 장 | 최정빈 (044-215-8590) |
|       |                  | 담당자 | 사무관 | 전재문 (044-215-8591) |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br>자산운용과   | 책임자 | 과 장 | 김성진 (02-2100-2660)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지호 (02-2100-2663) |
| 담당 부서 | 금융감독원<br>연금감독실   | 책임자 | 실 장 | 김기복 (02-3145-5180) |
|       |                  | 담당자 | 팀 장 | 황찬홍 (02-3145-5190) |



#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튼튼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2026. 10.

관 계 부 처 합 동



## 순 서

I. 성과 및 한계 ..... 1

II.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주요 내용 ..... 3

III. 향후 계획 ..... 13



## < 제도도입 및 경과 >

-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통한 체불예방,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 '05.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 사용자는 근로자(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에게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 퇴직급여 제도                                       | 특징                                                                                              |
|-----------------------------------------------|-------------------------------------------------------------------------------------------------|
| 퇴직금                                           |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 ※ <b>충당금 미적립 시 제재처분 x</b>                           |
|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 - 사용자가 <b>운용 결정</b> /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액(평균임금 30일분) 지급 ※ 사외적립 퇴직금 ※ <b>수익률이 근로자 급여액에 영향 x</b>         |
|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 - 근로자가 <b>운용 결정</b> (사용자는 근로자 계좌에 임금총액 1/12)<br>- <b>운용손익을 급여로 수령</b> ※ <b>수익률과 퇴직시 급여가 비례</b>  |
|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 근로자가 <b>운용 결정</b> (퇴직 시 수령한 급여 + 자기 부담금 추납)<br>- <b>운용손익을 급여로 수령</b> ※ <b>수익률과 퇴직시 급여가 비례</b>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 - 근로복지공단이 <b>공동 기금 운용</b> (50인 미만, 임금총액 1/12)<br>- <b>운용손익을 급여로 수령</b> ※ <b>수익률과 퇴직시 급여가 비례</b> |

- 퇴직연금 노사정TF\*('25.10.28.~)를 거쳐 기금형 활성화·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 발표('26.2.6.)

\* 노동계, 경영계, 정부, 청년, 공익(금융·연금·노동·사회복지 전문가) 등 총 18명

| 현 행      |        | 노사정 공동선언 |          |
|----------|--------|----------|----------|
| 〈퇴직급여제도〉 |        | 〈퇴직급여제도〉 |          |
| 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 〈퇴직연금제도〉 |        | 〈퇴직연금제도〉 |          |
| [계약형]    | [기금형]  | [계약형]    | [기금형]    |
| DC       |        | DC       | 금융기관 개방형 |
| DB       |        | DB       | 연합형      |
|          | 중퇴기금   |          | 공공기관 개방형 |

- 퇴직연금의 후불임금 성격, 수급권 보호에 대한 노사의 선호가 큰 만큼 노사정 합의에서 핵심 과제에 대한 방향성 제시
- 실무작업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금형 퇴직연금 설계안 마련, 사외적립 의무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의무화 방안 도출 → 노사정 합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마련

# I. 성과 및 한계

## 1. [성과] 양적 성장 가속화, 수익률 및 연금성 점진적 개선

- [양적 성장] '25년말 적립금 501.4조원으로 전년말(431.7조원) 대비 약 69.7조원(+16.1%) 증가, 400조원 경신 1년 만에 500조원 돌파

\* ▲('20) 255.5조 ▲('21) 295.6조 ▲('22) 355.9조 ▲('23) 382.4조 ▲('24) 431.7조

- [수익률 개선] '25년 연간 수익률 6.47%로 전년 대비 1.7%p 상승, 퇴직연금 수익률 집계\* 이래 최고 수준

\* ▲('20) 2.58% ▲('21) 2.00% ▲('22) 0.02% ▲('23) 5.26% ▲('24) 4.77%

- 투자상품 비중이 대폭 상승('15년 6.9% → '20년 10.7% → '25년 24.6%) 하는 등 저축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퇴직연금 운용 변화 중

\* '25년 실적배당형 수익률(16.80%)은 원리금 보장형(3.09%)의 5배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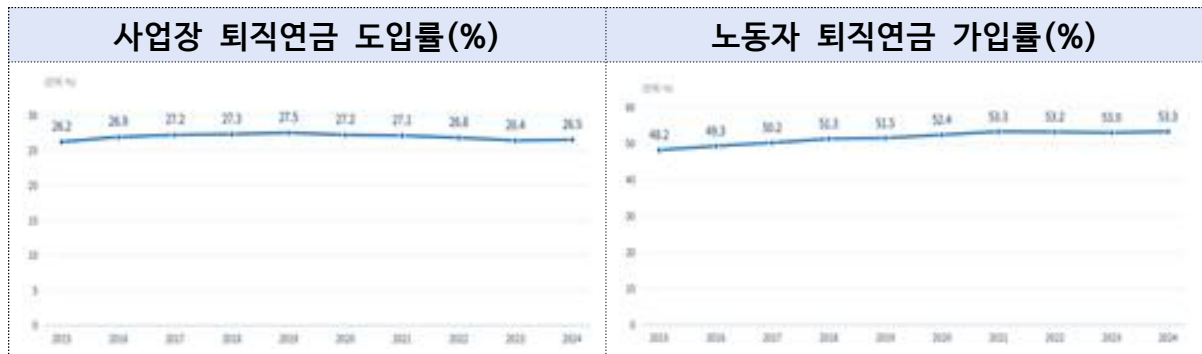
- [연금수령 확대] '20년부터 5년간 연금수령 계좌 비중 5배 증가('20년 3.3% → '25년 16.5%), 연금 수령금액 비중('20년 28.4% → '25년 61.6%) 약 2배 증가

- 평균 적립금은 연금계좌 1억 4,891만 원, 일시금계좌 1,833만 원 → 적립금이 축적될수록 연금 수령 비율 증가 경향



## 2. [한계] 도입률 정체, 낮은 수익률·중도인출로 노후보장 기능 미흡

- [도입률·가입률 정체] 최근 1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 노동자 가입률도 최근 53% 수준에서 정체 → “**체불 위험**”



-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23.2%로 영세기업 노동자일수록 노후 보장, 체불 위험에 노출

\* '24년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제도 도입·가입 현황 (%)

| 구분  | 5인 미만 | 5~9인 | 10~29인 | 30~49인 | 50~99인 | 100~299인 | 300인~ |
|-----|-------|------|--------|--------|--------|----------|-------|
| 도입률 | 10.6  | 32.7 | 57.3   | 74.2   | 82.2   | 88.7     | 92.1  |
| 가입률 | 11.9  | 29.5 | 48.2   | 56.0   | 60.9   | 69.1     | 70.6  |

- [장기적립·연금성 미흡] 이·퇴직, 주택구입 등 현실적 수요로 인해 연금수령(만 55세) 이전 **중도 활용 선호** 지속 → “**노후준비 지연 위험**”

- '24년 중도활용 총 18조 中 중도해지 15조(83.3%), 중도인출 3조(16.7%)

\* (중도해지) 이·퇴직 후 연금수령기(만 55세) 전에 계좌(IRP) 해지하여 인출  
(중도인출) 계속근로 중 주택구입 등 사유로 중간에 적립 금액을 인출

\*\* 중도인출 사유별(금액 비중) : 주택구입(67.3%) → 임차보증금(23.0%) → 회생절차(5.3%) 순

- 최근 개선 추세를 보이지만 **일시금 수령 비중**이 여전히 **높아**(’25년 계좌 수 기준 83.5%)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 기능이 미흡한 상황

- [낮은 수익률]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타 연금 대비 수익률 저조**”

\* '25년 수익률(%) : ▲ 국민연금 18.82 ▲ 공무원연금 17.2 ▲ 사학연금 18.9 ▲ 퇴직연금 6.47

## II.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주요 내용



### 1. [보편성 제고] 사외적립 의무화(체불 예방), 사각지대 해소

#### ① **全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노사정 합의안

- **[실태조사]**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1,500개) 대상 퇴직금 운영현황, 준비 필요기간·도입단계·지원방안 등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한 의견수렴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실태조사(노동研, '26.4~7월) 주요 내용

- ▲ (현황) 응답 사업장 전체가 퇴직금 활용, 12.2%가 퇴직연금도 병행
- ▲ (의무화에 대한 의견) 52.5%가 부담된다고 응답,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15.6%**
- ▲ (준비 필요기간) **3년 이내**로 응답한 경우가 80.1%
- ▲ (도입안 선호도) 규모별로 나누어 **5단계**(100인 이상 → 30~99인 → 10~29인 → 5~9인 → 5인 미만)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36.1%**로 가장 높음
  - 3단계(100인 이상 → 5~99인 → 5인 미만) 도입안도 **25.7%**가 응답
- ▲ (정부지원 필요사항) 퇴직연금 **납입금 한시적 직접 지원**(41%), 납입금 세액공제 등 **한시적 세제 혜택**(40.8%)이 가장 많았음
  - 그 외 **정책자금 융자나 보증 금리 한시적 우대**(30.9%), 퇴직연금 가입 **수수료 한시 지원**(28.9%), **교육·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20.9%) 순

- [의무화 방안] 노사정 합의를 거쳐 법 통과 후 준비기간 1년을 두고, 100인 이상(‘28.1월)부터 **규모별 3단계**로 의무화 방안 **확정**



\* 해당 규모 사업장 수는 '2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기준이며, 누적 수치가 아님

\*\* '26.2.6.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는 의무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적용

- [정부지원]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조기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 지원**, **신규 도입** 사업장 대상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 **신설**

\* '27년 정부안에 조기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60억, 경영자금 융자지원 62억 現 반영

| 구분           | 내용                                                                                                                                                |
|--------------|---------------------------------------------------------------------------------------------------------------------------------------------------|
| 조기도입<br>재정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시점 이전에 퇴직연금 조기 도입</li> <li>▪ (지원)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li> </ul> |
| 경영자금<br>융자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 경과</li> <li>▪ (지원) 경영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 2%p 이차보전 지원</li> </ul>              |
| 수수료<br>특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를 30인 이상 기업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중 가장 낮은 요율로 설정(고시 개정)</li> </ul>                     |

- 실태조사 결과 현장 수요가 있는 **세제 혜택\***, **수수료 지원\*\***, **교육·컨설팅**(퇴직연금 교육사업) **지속 지원**

\*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연 900만원 한도)

\*\* 중퇴기금 최초 가입 시 3년 면제, 이후 사용자계정 0.2%, 가입자계정 0.1%의 저율 수수료

## ② 사외적립 이행력 제고

- **[확정급여형]** 수급권 보호를 위해 **의무적립비율을 준수**토록 하고,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정기감독 지속 확대**(’26.下 500개소 최초 감독)
  - \* 적립 부족 시(최소적립금의 95% 이하) 1년 이내 부족비율의 1/3 이상 해소의무 부여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확정기여형]** 사용자 임금 정보 제공 의무 신설, 소득 정보 연계 등 사업주 **부담금 미납 현황 파악 체계** 구축 및 조치계획 마련

## ③ 노무제공자, 1년 미만 노동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 **[실태조사]** **초단시간 노동자·1년 미만 노동자**의 퇴직급여 운영 실태, 의무화에 따른 사용자 부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초단시간 노동자와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상 권리 보장(노동研)
- **[공감대 형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內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 의제로 반영(’26.6. 논의 시작),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대안 지속 강구
- **[중퇴기금 연계]** 특고·플랫폼 등 **노무제공자**의 중퇴기금 **IRP 가입** 시행(’26.7.1.)
  - \* 노무제공자·단시간 노동자의 중퇴기금 적립금 매칭 지원 신규반영 노력 지속

## ④ 규약 신고 의무 간소화(제도 도입 부담 완화)

- **[현행]**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 작성(노사합의), 고용노동부(지방관서) 신고 → 지방관서 심사 및 결과통보(7일 이내) → 사업장 퇴직연금사업자 계약
- **[개선]** 사용자의 **규약 신고 의무 완화**(중퇴기금과 동일, 계약서 같음) 추진 (단, 근로자대표 동의 및 의견청취 절차는 변동없이 유지)
  - 퇴직연금 계약 체결 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법」 상 의무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청취, 계약서(규약) 보관)를 준수하도록 규정

## 2. [연금수령 촉진] 장기 적립 후 노후 자금으로 연결

### ①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유인 확대

#### ① 담보대출 활성화

- [현행] 주거, 의료비 등 긴급한 사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
- [개선]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담보 제공 시 압류 허용, 담보제공 한도 확대(50 → 70% 등)

#### ② 연금수령 촉진제도 도입

- [현행] 퇴직급여 지급 시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을 자유롭게 선택
- [개선] 사전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제도(Opt-out 방식) 도입 검토

#### ③ 연금상품 다양화

- 장수(longevity), 투자 운용, 물가상승 등 **연금수령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의 개발** 유도(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지표 반영)

#### ④ 연금·일시금 비교 정보 사전 제공

- 연금·일시금 수령 시 기대수익, 수령액 등 **비교정보 사전제공 의무화**

### ② 퇴직연금 인식 제고

#### ① 퇴직연금 교육 활성화

- [현행]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관심 부족으로 장기적립에 소극적  
\* “IRP 사용법이 익숙치 않았어서 다 사용하고 해지했었어요. ... 당시에 그렇게 안내를 받기도 했었어요. 은행 가서 금액 찾고 해지하면 된다, 이렇게”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위한 FGI」, 노동研)
- [개선] 퇴직연금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플랫폼 등 통한 확산** 통해 적극적인 인식 개선 노력

## ② 퇴직연금사업자평가 고도화

- **[현행]** 정성평가 중심으로 사업자 임의제출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
  - 업권별·분야별 상위 10% 우수 사업자만 공개하고 있어 업권 간 경쟁 미비 및 평가 순위에 대한 왜곡적 이해 발생
- **[개선]** 연금성 강화(가입확대, 장기유지, 연금수령) 및 자산운용 수익률 성과 중심으로 평가 항목 재설계
  - 정량평가 중심, 공시지표 활용, 평가 결과의 객관적·투명한 공개

| AS-IS                                                                        |   | TO-B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지표 구성] 정성지표 중심</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지표 중심</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자료 확보] 공시지표 ≠ 평가지표</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지표 = 평가지표</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 공개] 업권별 상위 10%만 공개</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의 객관적, 투명한 공개</li> </ul> |

## ③ 장기연금 수령을 위한 세제지원 검토

- **[현행]** 납입단계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연 900만원 한도) 제공
  - '24.1.1.~, 수령 단계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확대(1,200 → 1,500만원 등)

### < 현재 퇴직연금 연금수령 시 과세체계 >

| 과세 항목    |                               |          |                         | 세율                     |
|----------|-------------------------------|----------|-------------------------|------------------------|
| 연금<br>수령 | → 자기부담금<br>및 운용수익<br>(연금소득) → | 15백만원 이하 |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br>(세율 3~5%)     |
|          |                               | 15백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br>분리과세(세율 15%) | 종합소득세<br>(세율 6~45%)    |
|          | 퇴직급여분                         |          |                         | 퇴직소득세<br>(산출액의 50~70%) |

- **[개선]** 청년 노후보장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수준 관계없이 동일하게 **세액공제율 15%** 적용(세제개편안에 포함)
  - '24~'26년 세제지원 효과를 점검하여 추가 세제지원 검토

### 3.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적정 수익률 확보] 기금형, 디폴트옵션 등

#### <1>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노사정 합의안**

##### ① 정의

-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수탁자 책임”이 핵심
-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 확대(계약형과 공존)

##### ② 유형 :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3개 유형 도입

- [금융기관 개방형] 민간 금융회사(단독 또는 컨소시엄)가 별도 수탁법인 설립,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
- [연합형] ①복수 사용자 연합이 별도 수탁법인 설립, 소속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 또는 ②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 개방형 운영
- [공공기관 개방형] 공공기관이 300인 이하 사업장 등 대상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영(중퇴기금 등)

##### ③ 제도의 설정

- [적용범위] DC(확정기여형) 및 IRP \* '25년: DB 228.9조, DC+IRP 272.5조  
- 기금형 내 단일운용 전략만 허용 → 가입자는 수탁법인만 선택
- [도입방법]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청취로 사업장 단위 도입(현행유지)  
- 사업장 내 계약형·기금형 복수 설정 가능, 다수 기금 설정 가능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기본값으로 기금형 설정 가능
- [수탁법인 성격] 공통 「퇴직급여법」 상 특수법인,  
금융기관개방형영리형 주식회사, 연합형비영리 법인, 공공기관개방형공공기관

## 4 인·허가

### 1 요건

- **[인적요건]** <sup>필수</sup>수탁자책임 이행·내부통제 총괄 인력(7명)은 직접 보유  
+ <sup>선택</sup>직접 운용 시 전문 인력(5~8명) 보유
- **[물적요건]** <sup>필수</sup>가입자 정보보호·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정보교류 통제 체계  
+ <sup>선택</sup>자산·부담금 납입이력 등 기록관리시스템, 비상 시 업무연속성 계획
- **[재무요건]** <sup>금융기관개방형</sup>기본 재무안전장치로 최소자본금 120억,  
<sup>연합형</sup>금융기관 개방형 대비 낮은 수준 설정(일부 정부보조 요청)  
\* (영국 NEST) 초기설립비용을 정부로부터 대여, '24년부터 '38년까지 상환 진행 중

### 2 (인가주체) 인가 위원회 방식<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 인가위원회는 노사,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

### 3 (인가절차) 예비인가 → 본인가 2단계 구조, 난립방지·규모의 경제 등

## 5 기금 거버넌스

- **[거버넌스]** <sup>운용</sup>이사회에 포괄적 권한위임+강력한 수탁자책임 부여,  
<sup>운영</sup>감사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 <sup>독립</sup>필수 외부위탁·외부감사·감독

이사회를 최종 책임기구로 두고 수급권 보호를 위한 운용, 운영, 독립 3중 거버넌스 구축

- ① (운용) 합리적 투자 및 위험관리
- ② (운영) 내부통제를 통한 운영상 보호
- ③ (독립) 외부 독립적 견제, 검증



- **[이사회 구성최소요건]** <sup>금융기관개방형</sup>대표이사 1명 + 이사회 의장 1명 + 하부위원회  
위원장 5명(독립이사 4명 이상<독립이사 중 30% 이상은 가입자 추천(최소 2명)>)  
<sup>연합형</sup>노사 대표 동수 원칙 + 필요 시 독립이사 포함, 이사 선출절차 규정

## ⑥ 노동자 수급권 보호장치

- [수탁자책임] 가입자의 최선의 이익(충실의무)을 위해 전문가 수준의 신의와 성실로 행사(주의의무)
  - 기금형은 정보 비대칭, 도덕적 해이 등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수탁자 책임 확보를 통한 수급권 보장이 필수적
- [입증책임 전환] 수탁법인이 의무 위반~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 책임 면책
  - 범위는 투자 등 운용, 이해상충 관리 영역, 설명의무 위반으로 한정
  - 수탁법인은 투자의사결정·이해상충관리 등 절차적 정당성 문서화, 자기입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합리적 절차를 준수하면 면책항변 인정
- [운영위험준비금] 적립금의 0.25% 수준 운영위험준비금 의무 적립
  - 가입자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한정해 활용, 별도 계정으로 관리

## ⑦ 기금운용 및 위탁관리체계

- [자산운용규제] 가능상품 포괄 제시(포지티브 규제), 분산투자 규제를 위해 법규에 동일 법인·계열기업군 최소 분산요건 명시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계열사 등 이해관계자 투자한도 설정
- [위탁관리체계] 책임이 아닌 처리의 위탁,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교차 검증 구조 확립, 이해상충 소지 사전 통제를 위한 위탁관리체계 구축
  - 상호견제와 독립성을 필요로 하는 교차 검증 업무는 의무위탁 (자산보관, 기준가산출, 운용성과평가)
  - 선관주의·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는 핵심 업무는 위탁불가 (투자정책 결정, 리스크 관리, 위탁기관 선정·관리)
  - 수탁법인 전문성 보완·효율성을 위한 업무는 위탁가능(자산운용, 운영관리)

## 8 관리·감독체계

- **[성과평가·공시]** 수탁법인의 성과 평가 및 결과 공시, 성과 미달 시 실효적 제재 → 가입자의 선택권 강화, 건전한 경쟁 유도
- **[수수료]** 계약형과 동일하게 제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사항은 가입자가 부담
  - 인가 요건, 평가지표, 공시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 책정 통제
- **[감독주체]** 감독협의회 개최, 제재처분은 주무부처(노동부)가 행사

### 〈 퇴직연금감독협의회(안) 〉

- (목적) 감독 기준의 통일적 적용, 유관 부처 간 효율적 사무 처리, 정보 공유 및 상호 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협의회로 운영
- (구성) 노동부 주관, 금융위·금감원 등 참여 → 각 기관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
- (기능) 매년 「기금형 수탁법인 감독 종합시행계획」 수립
  - 노동·금융 분야 감독 기준 조정, 정기·수시 검사 및 제재 결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범부처 주요 이슈 협의 등을 수행

- **[감독체계]** 진입규제(설립인가, 모회사 변경 시 사전승인) → 건전성·지배구조(최소영업자본액, 지배구조 감독, 내부통제기준) → 영업행위(적립금 운용 관련 의무, 자산운용전략 승인, 기금운용설명서 작성의무 부여 및 사전심사) 감독

## 9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활성화

- **[중퇴기금 확대]** 대상 확대('27.1월 100인 → '28.1월 300인 이하)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시 미도입 사업장 자동가입제도 도입 및 일정 기간 내 탈퇴(Opt-out)할 수 있는 선택권 보장
- **[인프라 확대]** 적립금 규모 증가에 따라 직접 운용역량(운용조직), 내부통제 강화 → 중장기적으로 별도 수탁법인<sup>퇴직연금공단</sup> 설립 검토
- **[국민연금공단 참여]**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방식, 범위 등에 대해 노사정, 전문가 간 이견 존재 → 국회 차원의 논의 필요

## <2>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 혁신

### ① 위험자산 투자비중 제한 완화(IRP)

- **[현행]** 안전자산(예금 등) 외 위험자산은 적립금 70% 한도로 투자
- **[개선]**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70%)를 단계적으로 완화
  - 규모, 시장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비중, DC 확대여부 추후 검토

### ② 투자가능상품 확대(중퇴기금 등)

- **[현행]** 가입자의 비상장주식(벤처) 투자 제한
- **[개선]** 중퇴기금의 경우 ‘중기부 LP성장펀드\*’ 출자 허용
  - \* 중퇴기금이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모펀드를 결성(LP성장펀드), 모태펀드는 중퇴기금에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제공
- 원리금보장형(예적금) 대비 수익이 높고 안정적인 **종합투자계좌(IMA)\***, **발행어음\*\*** 등을 DC·IRP 투자대상에 추가
  - \* 만기 시 원금이 확정지급 + 이자가 운용수익에 연동(年 수익률 약 3~8%)
  - \*\* 만기 1년 이내, 종투사 신용에 기반하여 정기예금(연 2.8~2.9%) 대비 수익률이 높음(연 2.9~3.2%)

#### 〈 퇴직연금 주요 자산운용규제 (現→改) 〉

| 구분       |             |               | 퇴직연금 종류 |       |            |
|----------|-------------|---------------|---------|-------|------------|
|          |             |               | DB      | DC    | IRP        |
| 규제<br>내용 |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 |               | 70%     | 70%   | 70%→단계적 상향 |
|          | 자산별         | 국내주식          | 가능      | 불가    | 불가         |
|          |             | 예·적금          | 가능      | 가능    | 가능         |
|          |             | 종투사 IMA, 발행어음 | 가능      | 불가→허용 | 불가→허용      |

### 3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고도화(DC)

- [솔림 개선] 현재 320여개의 상품을 평가 등을 통해 수익률·위험 조정성과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제도 개선안 검토
- [적용시기]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만기 後 4주 → 만기 前 2주'로 변경하여 낮은 금리의 대기성 운용기간을 축소

\* 대기성 운용기간의 수익률은 일반 예금이자 대비  $\Delta 0.1 \sim \Delta 0.2\% p$

|    | T-2주           | 만기(T)          | T+4주           | T+6주           |
|----|----------------|----------------|----------------|----------------|
| 현행 |                | 가입상품<br>만기     | 디폴트옵션<br>적용 통보 | 디폴트옵션<br>적용 개시 |
| 개편 | 디폴트옵션<br>적용 통보 | 디폴트옵션<br>적용 개시 |                |                |

- [적용범위] 디폴트옵션 도입 이전에 적립된 금액도 적용되는 방안 검토
- \* 디폴트옵션 도입 이전 적립된 금액은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는 디폴트옵션 미적용
- [평가] 수익률 등 성과평가 실시 → 불이익 부여(가입중지, 퇴출 등)

### 4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실효성 강화(DB)

- [현행]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에 의무화되었으나, 적립금운용계획서만 형식적으로 마련하여 합리적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한계
- [개선] 적립금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용계획·운용현황(적립금 규모·자산구성비율 등) 및 성과(기간별 수익률 등) 공시 추진(법적 근거 마련)

## III. 향후 계획

- 「퇴직급여법」 개정안 마련(11월) 및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12월)